

협회 명칭개정

(사)한국PC기술협회

■ 제목 : 국토교통부에 협회 명칭 및 정관 개정 요청

■ 내용 : (사)한국복합화피씨기술협회에서 (사)한국피씨기술협회로 명칭개정

■ 승인일자 : 2025년 7월 29일(화)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수신 (사)한국복합화피씨기술협회
(경유)
제목 정관변경 허가

1. (사)한국복합화피씨기술협회 복피회 제25-087(2025.7.24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
2. 「민법」 제42조 및 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귀 법인의 정관 변경을 볼입과 같이 허가하오니. 동 법 제52조 및 동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인 변경등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우리 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정관변경허가서 1부.
2. 개정 정관 1부.
3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정관변경허가서

1/1

정관변경허가서

사단법인 한국복합화피씨기술협회 정관 중 「민법」 제42조와 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.

2025년 7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
정관

제1조 중 “한국복합화피씨기술협회(Korea Society of Hybrid Precast System; 약칭 KPCE)”를 “한국피씨기술협회(Korean Precast Concrete Institute; 약칭 KPCI)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복합화 피씨 건축”을 “피씨 건축”으로, “복합화 피씨 기술”을 “피씨 기술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송파구 법원로 11길 11,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Ⅱ A동 7층 701호”를 “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알오피스텔 1110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“복합화 피씨”를 각각 “피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건설교통부상관이 복합화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“복합화 피씨구조”를 각각 “피씨구조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5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10명”을 “7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명”을 “2명 이내”로 한다.

제15조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제1호 단서 중 “연임”을 “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와 연임) 제15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